

●환경부령 제1126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1월 01일

환경부장관 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측정 결과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을 가진 측정기기만 해당한다)

제6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하는 측정기기
2. 성능인증을 위한 견본(모델별로 5대 이내로 한정한다)으로 수입하는 간이측정기
3. 가전제품, 자동차 등의 부속품으로 설치되는 측정기기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가스누설경보기 및 감지기
5.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조허가·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제7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 정도검사를 받은 후의 정도검사주기는 해당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산정한다.

1.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가 정도검사기간 전에 측정기기의 성능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정도검사를 받는 경우
2. 사용하지 않는 측정기기로서 정도검사를 받지 않고 정도검사기간이 지난 것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정도검사를 받는 경우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포함한다)하여야”를 “포함한다)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를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로, “사업자등록증의”를 “사업자등록증명의”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포함한다)하여야”를 “포함한다)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를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로, “사업자등록증의”를 “사업자등록증명의”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장 또는 해당 사업장 인근 지역에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긴급하게 측정을 의뢰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의3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된 환경오염사고 발생 사실 확인서(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5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측정대행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환경오염사고 발생 사실 확인 신청서에 환경오염사고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환경오염사고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별지 제32호서식의 환경오염사고 발생 사실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7조의6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시험·검사기관이 측정대행업자인 경우: 별표 9에 따른 분야별 책임기술인력

나. 시험·검사기관이 측정대행업자 외의 자인 경우: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검정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기술능력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장이 해당 분야별로 지정하는 사람

제17조의7제2항 중 “15일” 을 “20일” 로 한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매년 8월 말까지 해당 연도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12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표 1의2 제7호나목의 구분란 중 “자동측정기” 를 “연속자동측정기” 로 한다.

별표 2의4 제1호가목 및 제2호의 표 중 “최초 제조일자” 를 각각 “제조일자” 로 한다.

별표 6 제2호바목1)의 기술능력란 중 “4명” 을 “3명” 으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 제2호5)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술능력 중 기술인력을 일부 갖추지 못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	-------------	-------------	------

별표 10 제2호5)바) 위반사항란 중 “고장” 을 “수리요청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고장” 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비 및 실험기기” 를 “별표 9 제2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1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항목별” 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도관리 평가항목별” 로 하고, 같은 호 가목2) 표 외의 부분 중 ““적합” ” 을 ““만족” ” 으로, ““부적

합” 을 “불만족” 으로 하며, 같은 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별 Z 값에 따른 평가	
만족	불만족
$ Z \leq 2$	$2 < Z $

별표 11의2 제1호나목2) 중 “적합” 을 “만족” 으로, “부적합” 을 “불만족” 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가” 에서부터 “다” 를 “가목부터 다목까지” 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라목 표의 부적합의 판정기준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 소지자를 해당 분야별로 1명 이상 확보하지 못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현장평가일 기준으로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 소지자를 해당 분야별로 1명 이상 확보하지 못한 경우

나. 현장평가를 시작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 소지자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가 120일 이상 연속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신청내용란 중 “⑧ 형 식” 을 “⑧ 형 식(모델명)” 으로, “⑨ 상품명(고유명칭)” 을 “⑨ 운용프로그램(버전 등)” 으로 하고, 같은 서식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작성 방법

- ⑨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4호 괄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⑩란은 부족한 경우 별지로 작성해도 됩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② 대상 측정기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상 측정기기	제조사/제조국	형식(모델명)	운용프로그램(버전 등)

별지 제1호의3서식 비고란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의 운용프로그램(버전 등)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4호 괄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신청인란 중 “주소” 를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로 하고, 같은 앞쪽 승인내용란 중 “형 식” 을 “형 식(모델명)” 으로, “상품명(고유명칭)” 을 “운용프로그램(버전 등)” 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신고내용란 중 “형 식” 을 “형 식(모델명)” 으로, “상품명(고유명칭)” 을 “운용프로그램(버전 등)” 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앞쪽 신청내용란 중 “⑨ 형 식” 을 “⑨ 형 식(모델명)” 으로, “⑩ 상품명(고유명칭)” 을 “⑩ 운용프로그램(버전 등)” 으로 하고, 같은 서식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작성 방법

- 1. ㉔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4호 괄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2. ㉕란은 부족한 경우 별지로 작성해도 됩니다.

별지 제5호의4서식 앞쪽 승인내용란 중 “형 식” 을 “형 식(모델명)” 으로, “상품명(고유명칭)” 을 “운용프로그램(버전 등)” 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6서식 신청내용란 중 “기기명칭” 을 “형 식(모델명)” 으로, “측정방식” 을 “측정방법 및 원리” 로 한다.

별지 제5호의7서식 인증내용란 중 “측정방식” 을 “측정방법 및 원리” 로, “상품명(고유명칭)” 을 “형식(모델명)” 으로 하고, 같은 서식 인증내용란의 성능인증 등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성능인증 등급
<input type="checkbox"/> 1등급 <input type="checkbox"/> 등급외

별지 제6호서식 신청내용란 중 “형 식” 을 “형식(모델명)” 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사항

회 사 명		제 작 회 사	
대 표 자		제 작 번 호 (연 월 일)	
형 식 (모델명)		형 식승인번호 (승인받은일자)	(년 월 일)
최초 정도검사일 (연 월 일)		직전 정도검사일 (연 월 일)	

별지 제8호서식의 표 중 “형 식” 을 “형 식(모델명)” 으로, “기 기 고 유 번 호” 를 “제작번호” 로, “취 득 연 월 일” 을 “최초 정도검사일” 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합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 을 “사업자등록증명” 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제1호 중 “해당)” 을 “해당합니다)” 로 하고, 같은 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아니하는” 을 “않는” 으로, “직 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를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로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합니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의2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도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9의 세부등록기준에 따라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부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0 제2호5)나), 같은 호 5)바)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정도관리 판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1의2 제2호라목의 부적합의 판정기준란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 산정 시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 소지자를 확보하지 못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측정대행업의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세부등록기준 (제14조제1항 관련)

1. 기술능력

분야	기술능력
가. 대기	1) 기술인력 가) 책임기술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1명 (1)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2)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대기관리기술사 (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대기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대기 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일반기술인력: 대기환경산업기사 1명 다) 시료채취·분석요원 1명 2) 대기분야 정도관리 검증서
나. 수질	1) 기술인력 가) 책임기술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1명 (1) 수질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2)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질관리기술사 (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수질 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일반기술인력: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다) 시료채취·분석요원 1명 라) 생태독성시험 기술인력(생태독성물질 항목을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가)의 책임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1명 (1) 수질분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생태독성물질에 대한 시험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생태독성물질에 대한 시험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수질분야 정도관리 검증서
다. 소음·진동	기술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인력 1명 (1) 소음진동산업기사 (2) 화학분석기능사

	<p>(3) 환경기능사</p> <p>(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p>
라. 실내공기질	<p>1) 기술인력</p> <p>가) 책임기술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1명</p> <p>(1)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p> <p>(2)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p> <p>(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대기관리기술사</p> <p>(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대기환경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대기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p> <p>나) 일반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대기환경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중 1명</p> <p>다) 시료채취·분석요원 1명</p> <p>2) 실내공기질 분야 정도관리 검증서</p>
마. 악취	<p>1) 기술인력</p> <p>가) 책임기술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1명</p> <p>(1)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p> <p>(2)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p> <p>(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대기관리기술사</p> <p>(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대기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대기 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p> <p>나) 시료채취·분석요원 1명</p> <p>다) 악취관정요원 5명(복합악취 항목을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p> <p>2) 악취 분야 정도관리 검증서</p>

비고

1. 시료채취·분석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가. 해당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화공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환경기능사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학과를 졸업

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악취판정요원의 선정기준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3. 위 표의 등록 분야 간에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4.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인력은 해당 분야 측정대행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가.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대기 분야의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나.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수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2. 시설 및 장비

분야	등록항목	등록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대기	기본항목	가) 실험실 나)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시료변질 방지용 설비를 갖춘 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대 다) 가스상 물질 시료채취기 라) 입자상 물질 시료채취기 마) 분광광도계 바) 아황산가스 측정기 사) 일산화탄소 측정기 아) 질소산화물 측정기
	선택항목	1) 무기물질의 경우: 분광광도계 및 이온크로마토그래프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비를 각각 갖추어야 함 가) 환경대기 중 미세먼지의 경우: 미세먼지 연속자동측정기 나) 환경대기 중 아황산가스의 경우: 아황산가스 연속자동측정기 다) 환경대기 중 일산화탄소의 경우: 일산화탄소 연속자동측정기 라) 환경대기 중 질소산화물의 경우: 질소산화물 연속자동측정기 마) 오존의 경우: 오존 연속자동측정기 2) 금속화합물의 경우: 다음의 장비 중 어느

		<p>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p>	<p>하나 이상을 갖춰야 함 가) 원자흡수분광광도계 나)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기 다) 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기</p> <p>3)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경우: 다음의 장비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춰야 함 가) 분광광도계 나)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다)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라)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마) 총탄화수소 측정기(등록항목에 총탄화수소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p>
	기본 항목	<p>가) 수소이온농도 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다) 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총유기탄소 라) 부유물질</p>	<p>가) 실험실 나)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 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배양기 라) 항온수조 마) 수소이온농도 측정기</p>
수질	선택 항목	<p>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수질 및 수생태계 분야 환경기준 항목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에 그 시험방법이 규정된 항목만 해당한다) 다) 현장측정항목(전기전도도, 온도, 투명도, 유량) 중 하나 이상</p>	<p>1) 이온류의 경우: 다음의 장비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춰야 함 가) 이온 크로마토그래프 나) 액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다) 분광광도계 라) 자동분석기(이온류의 연속흐름법)</p> <p>2) 금속류의 경우: 다음의 장비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춰야 함 가) 원자흡수분광도계 나)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광도계 다) 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기 라) 분광광도계</p> <p>3) 유기물질·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다음의 장비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춰야 함 가)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나)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p> <p>4) 생물의 경우: 등록항목별로 다음의 장비를 각각 갖춰야 함 가) 생태독성의 경우: 생물 배양기 나) 미생물의 경우: 미생물 배양기</p> <p>5) 현장측정항목의 경우: 등록항목별로 다음의</p>

			<p>장비를 각각 갖춰야 함</p> <p>가) 전기전도도의 경우: 전기전도도 측정기</p> <p>나) 온도의 경우: 온도계</p> <p>다) 투명도의 경우: 투명도판</p> <p>라) 유량의 경우: 유속계</p>
소음·진동	기본 항목	<p>가) 소음</p> <p>나) 진동</p>	<p>가) 측정업무용 차량 1대</p> <p>나) 소음계</p> <p>다) 소음기록계</p> <p>라) 소음계 외부교정기</p> <p>마) 진동계</p> <p>바) 진동기록계</p>
실내 공기 질	기본 항목	<p>가) 미세먼지 (PM-10, PM-2.5)</p> <p>나) 이산화탄소</p> <p>다) 포름알데히드</p> <p>라) 총부유세균</p> <p>마) 일산화탄소</p> <p>바) 이산화질소</p> <p>사) 라돈</p> <p>아) 휘발성 유기화합물</p> <p>자) 곰팡이</p>	<p>가) 실험실</p> <p>나)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p> <p>다) 실내 미세먼지 시료채취 장치</p> <p>라) 실내 이산화탄소 측정기기</p> <p>마)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프</p> <p>바) 총부유세균 공기채취장비(bio air sampler), 미생물배양기</p> <p>사) 실내 일산화탄소 측정기기(비분산적외선법에 따른 측정기기를 말한다)</p> <p>아) 실내 이산화질소 측정기기(화학발광법에 따른 측정기기를 말한다)</p> <p>자) 비적계수기(현미경) 또는 연속라돈측정기</p> <p>차)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또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p>
	선택 항목	<p>가) 석면</p> <p>나) 오존</p>	<p>1) 석면의 경우: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함</p> <p>가) 석면 시료채취용 펌프</p> <p>나) 위상차현미경</p> <p>2) 오존의 경우: 오존측정기를 갖춰야 함</p>
악취	선택 항목	<p>가) 복합악취</p> <p>나)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지정악취물질</p>	<p>1) 복합악취의 경우: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함</p> <p>가)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p> <p>나) 공기희석관능 실험실</p> <p>다) 무취공기 제조장치</p> <p>라) 악취희석장치</p> <p>2)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지정악취물질의 경우: 지정악취물질 실험실, 시</p>

		<p>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 및 등록항목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비를 갖추어야 함</p> <p>가) 암모니아의 경우: 분광광도계</p> <p>나) 황화합물, 트라이메틸아민, 휘발성유기화합물, 지방산류의 경우: 가스 크로마토그래프</p> <p>다) 알데하이드류의 경우: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또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프</p>
--	--	---

비고

1. 분야별 등록항목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분류체계에 따른다.
2. 실험실에서는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오염물질 처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위 표의 측정대행업 등록 분야 간에 시설·장비를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4. 다음 표 각 목에 따른 측정대행업 등록 분야별 시설 및 장비 중복 허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는 해당 분야 측정대행업의 시설 및 장비로 등록할 수 있다.

측정대행업 등록 분야	시설 및 장비 중복 허용 대상
가. 대기분야, 실내공기질 분야, 악취 분야 중 1개 분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 3)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4)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자
나. 수질분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검사기관 2)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3)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5)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 6)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 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 8)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수질분야 환

	경전문공사업자
다. 소음·진동분야	1) 「소음·진동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소음·진동분야 환경전문공사업자

Application for Type Approval(Change approval) Certificate of Measuring Instrument

(front)

receipt number	receipt date	process 7 days
----------------	--------------	----------------

[] vehicle [] air [] water [] noise·vibration [] soil [] drinking water [] indoor air quality

Applicant	① Vendor	
	② Name	③ Date of Birth
	④ Business Address (Phone: _____)	
Application information	⑤ Company	⑥ Country
	⑦ Product	⑧ Type(Model Name)
	⑨ Operation program(Ver.)	⑩ Measuring range minimum : maximum :
	⑪ Minimum scale	⑫ Bias ±
	⑬ Method and Process	
	⑭ Change/Modification of type Approval	

I hereby apply for type/change approval as stated above under Para. 1·7, Article 9 of the Environmental Testing and Inspection Act and Para. 2, Article 5 of its Enforcement Rules.

mm/dd/yyyy

applicant: _____ name or signatur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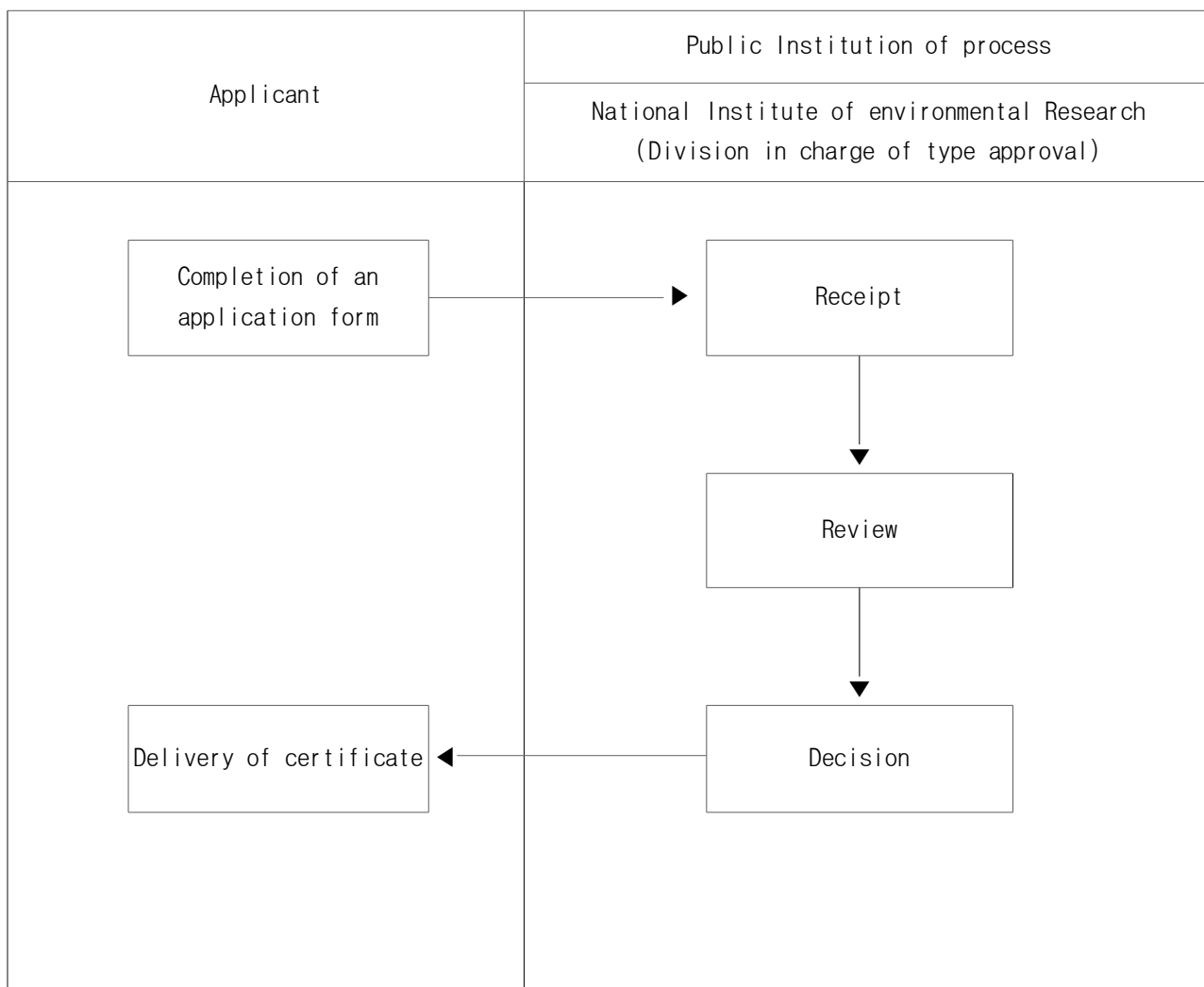
Required documents	1. Application for type approval a. Documents describing products b. Manual on process and performance c. Performance test reports d. Confirmation documents of measuring device software	2. Application for change/modification approval a. Type approval certificate or certificate of import declaration b. Document on modification c. Performance test reports d. Confirmation documents of measuring device software	no fee
--------------------	---	--	--------

Guideline for application form filling

1. ⑨ is only for the case of Para.4, Article 3 of Enforcement Rules of the Environmental Testing and Inspection Act.
2. Please use another sheet of paper if ⑬ is not enough.

Process

This application form will be processed as following steps bellow.



Type Approval Certificate of Measuring Instrument

Certificate No		
Applicant	Vendor	
	Name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Business address (Phone :)	
Approval information	Company	Country
	Product	Type(Model)
	Operation program(Ver.)	Measuring range minimum : maximum :
	Minimum scale (unit)	Bias ±
	Approval Conditions	

We certify type approval as stated above under Para. 1·7, Article 9 of the Environmental Testing and Inspection Act and Para. 3, Article 5 of its Enforcement Rules.

mm/dd/yyyy

QR코드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put type="checkbox"/> 제조 <input type="checkbox"/> 수입 <input type="checkbox"/> 승인 취소		측정기기 형식승인 관리대장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연월일		
상호 (사업장 명칭)						
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형식승인사항						
기기명칭	형식 (모델명)	운용프로그램 (버전 등)	제작사	측정범위	최소 눈금	오차범위
승인조건						
측정방법 및 원리						
형식승인 취소 사유		※ 형식승인이 취소된 측정기기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 자동차 [] 대기 [] 수질 [] 소음·진동 [] 토양 [] 먹는물 [] 실내공기질

신고인	상호(사업장명칭)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내용	형식승인번호	승인연월일
	제작사	제작국
	기기명칭	형 식(모델명)
	운용프로그램(버전 등)	측정범위 최소 : 최대 :
	최소눈금(단위)	공인측정오차범위 ±
	측정방법 및 원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없 음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입신고필증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운용프로그램(버전 등)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4호 괄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Acceptance for Import Declaration of Environmental Measuring Instrument

Declaration No. _____

Applicant	Vendor		
	Name		
	Address	(Phone : _____)	
	Business address	(Phone : _____)	

Application information	Certificate No	Issue date
	Company	Country
	Product	Type(Model)
	Operation program(Ver.)	Measuring range minimum : _____ maximum : _____
	Minimum scale	Bias ± _____
	Conditions	

We accepted the import of an environmental instrument as stated above under Para. 3, Article 9 of the Environmental Testing and Inspection Act and Para. 2, Article 6 of its Enforcement Rules.

mm / dd /yyyy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예비형식승인표 발급대장

발급번호	예비승인번호	예비승인연월일
------	--------	---------

[] 제조 [] 수입

상호 (사업장명칭)	
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전화번호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예비형식승인사항

기기명칭	형식 (모델명)	운용프로그램 (버전 등)	제작사 (수입의 경우)	측정범위	최소검출한계	오차범위
예비승인조건						
측정방법 및 원리						

측정기기 구매자

※ 본 환경측정기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며, 향후 반드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형식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예비제품임을 인지하고 구매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제 호

정도검사 증명서

QR코드

측 정 항 목 :

형식(모델명):

검 사 일 자:

유 효 기 간: . . . 까지

형식승인번호:

제 조 사:

제 작 번 호:

검 사 기 관:

검 사 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정도검사를 거친 측정기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장 직인

< 비고 >

1. 정도검사 증명서는 환경측정기기의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합니다.
2. 환경측정기기에 붙이는 면을 고려하여 정도검사 증명서의 규격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대기분야 측정기록부

발급번호 : 000000-00

대기 측정기록부						
① 의 뢰 인	상 호(기관명)			② 일 반 현 황	시 설 별	
	소 재 지(주소)				종 류 별	
	대 표 자(의뢰인)				주 생 산 품	
	환 경 기 술 인					
③ 의 뢰 내 용	측 정 용 도					
	대 상 의 명 칭 (측정지점)					
	의 례 항 목					
④ 시 료 채 취	현 장 기 상	기 온	습 도	기 압	풍 향	풍 속
		℃	%	mmHg		m/s
	배 출 가 스	배출가스 유량		산소농도		기타
		Sm ³ /분		%		
	채 취 자 의 견					
채 취 일 시	채취 일 : . . .			시료채취자	(서명)	
	채취 시간: ~				(서명)	
⑤ 측 정 분 석 결 과	측정항목	관련 기준	측정분석값	측정시간	측정분석방법 (기기명)	비 고
				~		
				~		
				~		
				~		
	분석기간	~			분석기술인	(서명)
				책임기술인	(서명)	
⑥ 총 합 의 견						
<p>위와 같이 측정분석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p>						
※ 의뢰사항과 관련이 없는 란은 “해당 없음”으로 기재됩니다.						

대기 측정기록부										
(이 서식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항목을 굵직에서 측정할 경우에 작성한다.)										
① 의 뢰 인	상 호(사업장명)				② 일 반 현 황	업 종				
	사업장소재지(주소)					시설 종류				
	대표자(의뢰인)					사업장 종별				
	환경 기술인									
③ 의 뢰 내 용	측 정 용 도									
	굴 뚝	굴뚝 명칭	높이		안지름(측정공)		굴뚝 종별			
				m		m		종		
의뢰 항목										
④ 시 료 채 취	현 장 기 상	날씨	기온	습도	기압	풍향	풍속			
				℃	%	mmHg		m/s		
	배 출 가 스	표준산소농도		실측산소농도		배출가스유량(산소보정 전)		배출가스유량(산소보정 후)		
		%		%		Sm ³ /분		Sm ³ /분		
		수분량		배출가스온도		배출가스 유속		기타		
		%		℃		m/s				
	방 지 시 설	명 칭		대 상 물 질				방 지 효 율		
								%		
								%		
	채 취 일 시	채취 일 : . . .			시료채취자			(서명)		
채취 시간: ~			(서명)							
			(서명)							
⑤ 시 설 가 동 상 황	배출시설 명칭	측정당시 시간당 사용(생산)량					방지시설 명칭			
		연료사용량	제품생산량	소각량	원료투입량	종류		단위		
⑥ 측 정 분 석 결 과	측정항목	허용 기준	측정분석값	측정시간		측정분석방법 (기기명)		비 고		
					~					
					~					
					~					
	분석기간	~			분석기술인		(서명)			
책임기술인					(서명)					
⑦ 종합 의견										
위와 같이 측정분석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합니다. ~~~~~ 년 월 일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의뢰사항과 관련이 없는 칸은 “해당 없음”으로 기재됩니다. ※ 액체연료는 황함유량을 ()안에 %단위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 측정기록부										
① 의뢰인	상 호(기관명)				② 일반현황	시 설 별				
	소 재 지(주소)					종 류 별				
	대 표 자(의뢰인)					주 생 산 품				
	환 경 기 술 인									
③ 의뢰내용	측 정 용 도									
	대 상 의 명 칭 (측정지점)									
	의뢰항목									
④ 시료채취	채 취 용 기 및 수량	PE	L	PP	L	유리	L	기타	L	
	채 취 자 의 견									
	채 취 일 시	채취 일 : . . .				시료채취자	(서명)			
		채취 시간: ~					(서명)			
⑤ 측정분석 결과	측정항목	관련 기준	측정분석값		측정분석방법 (기기명)		비 고			
	분석기간					분석기술인	(서명)			
						책임기술인	(서명)			
⑥ 총 합 의 견										
<p>위와 같이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p> <p>※ 의뢰사항과 관련이 없는 란은 “해당 없음”으로 기재됩니다.</p>										

환경오염사고 발생 사실 확인 신청서(확인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제 - 호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명칭)	측정대행업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소재지(측정대행업체)	(전화번호:)	
환경오염사고 내용	일시 년 월 일 (시)	오염사고 지역	
	사고 내용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의 사후 제출을 위하여 환경오염사고 발생 사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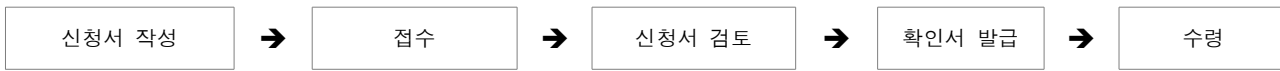
년 월 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직인

첨부서류	환경오염사고 상세 내역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 또는 대도시(측정대행업 담당부서)

신청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성능인증의 대상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수입하거나 가전제품·자동차의 부속품으로 설치되는 간이측정기 등을 제외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고, 측정대행업자가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특정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환경오염사고 발생으로 인해 사업자가 긴급 측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측정대행업자의 기술인력 기준을 책임기술인력, 일반기술인력 및 시료채취·분석요원 등으로 세분화하고, 측정대행업자가 작성하는 시험·검사 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에 측정대행업자의 책임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가 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허위·부실 측정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며, 환경부장관이 시험·검사 등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시험·검사 등의 집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